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 2017. 4. 28.

개정 2018. 6. 29.

제 1 조 (목적)

이 기준은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(이하 "법"이라 한다.) 제 58 조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"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그외 업무 관련 법규"(이하 "관련법규"라 한다.)와 집합투자계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 및 회사의 관련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"수수료"라 함은 집합투자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나. 성과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나. 판매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- 다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·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마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2. 수수료 :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- 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,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 - 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
3. 투자자문수수료 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제 4 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,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수수료 부과절차)

- 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및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,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집합투자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- ④ 투자자문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⑤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문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및 보수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제 6 조 (설명의무)

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기준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.

제 7 조 (공시 및 통보)

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 58 조 제 1 항에 의거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 58 조 제 3 항에 의거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기준의 제정 및 개정)

이 기준은 이사회(이사가 1 인일 시 그 이사)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기준은 2017 년 4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기준은 2018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